

미국과 캐나다의 거액전자지급결제제도 비교연구

- 미국의 Fedwire와 캐나다의 LVTS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ssessment Between LVTS of Canada and Fedwire of America as a
Wholesale Electronic Payment System

이병렬(Byeong-Ryul Lee)

(창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강사)

목 차

I. 서 론	IV.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의 위험관리 및 지급의 최종 성규정 비교
II. 선행연구분석 및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의 지배구조 비교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III.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방법 및 착오규정 비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본 논문은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인 캐나다의 LVTS와 미국의 Fedwire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왜냐하면 양국은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에 참가하고 있는 주요 14개국 중 동일한 북미경제권이며, LVTS와 Fedwire는 양국을 대표하는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 양국의 시스템은 지급시스템의 제도적 기반과 지배구조, 참가방법, 지급지시의 착오, 위험관리정책 및 지급의 최종성과 효과가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양 지급시스템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참여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더욱 보편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액과 거액이체시스템을 분리운영하고 있는 미국 및 캐나다와 다르게 한국은 통합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비록 연계결제망의 구축으로 10억원이상의 거액자금도 1회이체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자금이체 주체별 및 금액별로 분리하여 참가자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에 관한 명확한 정의 및 유형에 관한 규정이 한국의 제도에서는 명확한 명시가 없다. 참가자를 안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체규모에 제한이 사라진 만큼 참가기관에게 지급시스템 운영 기술력 확보, 적절한 비상시에 대비 백업자원 및 엄격한 보안 및 기술 요구조건 등을 추가하여 참가요건을 더욱 엄격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LVTS, Fedwire, 지배구조, 착오, 위험관리

I. 서론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은 각국 마다 지배구조, 참가방식 및 위험관리대책 등에서 차이가 조금씩 있다. 그러나 각국의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사이에 거액의 자금을 이체하지만 소액 은행 간 채권·채무를 최종결제 하는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는 면에서 유사하다. 21세기에 진입하면서 거액지급결제시스템도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다양해진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및 캐나다와 같은 금융선진국들은 혁신적인 정책들을 시행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안전한 결제시스템으로 개편하려는 여러 조치들을 진행시켜왔다.¹⁾

예를 들면,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은 15년 전부터 Fedwire(Federal Reserve Wire Transfer Network)전산시스템을 개편하여 수요자들의 다양해진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고 시스템의 유연성을 제고할 목표로 ‘Fedwire Modernization Project’를 추진하여 최근에 완료하였다. 특히 2014년 4월에 FRB는 통합회계시스템(Integrated Accounting System: IAS)를 분산처리구조를 가진 기업회계시스템(Enterprise Accounting System: EASy)으로 교체하여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계정 관리가 한층 용이한 결제시스템으로 한 단계 발전시켰다.²⁾

캐나다도 1999년 2월부터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인 LVTS(Large Value Transfer System)를 가동한 이후 지급처리절차를 포함한 금융지급서비스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특히 캐나다 재무부는 매 5년마다 금융법체계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뿐 아니라 지배구조 및 시스템 참가요건 등에 적용할 법체계를 유연하게 개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응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현재 양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모두 체결한 높은 무역의존도를 가진 한국입장에서 이들 국가의 지급결제시스템에 관한 변화와 발전에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캐나다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교역구조를 갖추고 있어 국내산업구조를 대폭적으로 조정하지 않아도 무역을 확대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FTA 체결을 계기로 미래

1) 한국은 1994년 12월 한은 금융망(BOK-Wire+)을 통한 거액자금을 은행 간에 이체를 개시한 이후 새로운 업무처리방식을 도입하여 결제리스크의 감축, 참가대상기관의 확대 및 용이한 접근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그 결과 2016년 3월 3일부터는 한국은행의 한은금융망(금융기관 간 거액자금이체 처리)과 전자금융공동망(인터넷뱅킹 등 금융기관의 일반 고객 간 자금이체 처리)을 직접 연계하여 기업 등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자금도 연계결제 도입으로 1회에 이체가 가능하게 되었다.

2) IAS는 미 연방준비은행이 제공하는 모든 금융서비스(FedACH, Fedwire Funds, Fedwire Securities, Checks, FedCash 등)의 거래내용을 기록하여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임. EASy는 일관된 데이터 표시 방식 등으로 향상된 조회 서비스(계좌잔액, 일중 및 마감대사전송 등) 및 실시간 리포트에 중점을 둔 시스템 임.

에 지속적으로 무역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³⁾ 또한 미국은 한국과 2012년 3월에 FTA를 체결한 이후 무역흑자규모가 2013년 181억 달러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약 300억 달러까지 근접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시장의 명성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 및 캐나다와 상품시장간 교역이 증대될수록 이를 결제하기 위한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의 유용성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거액지급결제시스템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입장이다.

한편, 캐나다와 미국은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에 참가하고 있는 주요 14개국 중 동일한 북미경제권이기는 하지만 양국의 지급시스템은 지배구조를 포함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Fedwire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이 직접 소유·운영하면서 결제기관으로서 역할까지 수행하는 등 기능이 통합되어 있다.⁴⁾ 반면 캐나다의 LVTS는 스위스, 홍콩처럼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민간운영기관이 지분회사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비영리기관인 캐나다지급협회(CPA)가 운영하고 있다는 면에서 지급시스템의 지배구조 및 운영방식에 있어서 양국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⁵⁾ 그러나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의 주체는 다르지만 운영의 근거는 법률에 두고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규칙 및 절차를 운영기관이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참가기관들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와 같은 양국 지급결제시스템의 동질성과 차별성에 근거를 두고 문헌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지배구조, 제도적 기반구성, 참가방법, 착오, 위험관리 및 지급의 최종성 등 참가자간의 책임과 의무를 결정짓는 주요 쟁점들을 제도적 부분에 한정하여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캐나다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2014년 3월 11일 한국과 FTA를 타결시켜 한국의 12번째 FTA 협정국으로서 G8 회원국이며 세계 11 경제대국이다. 한국과는 100억불 내외의 무역규모로 25위의 교역 상대국이다.

4) 미국은 Fedwire의 호주, 브라질, 유럽연합처럼 민간기관인 The Clearing House Association LLC의 자회사인 PaymentsCo가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를 운영하는 등 복수의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을 보유하는 이중적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5) 캐나다의 LVTS는 중앙은행이 결제기관, 민간기구인 캐나다지급협회가 운영기관으로, 정부부서인 재무부는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업무와 기능이 분산되어 있다.

II. 선행연구 및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의 지배구조 비교

1. 지배구조 및 특징

세계 주요국들의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의 지배구조는 미국의 Fedwire(Federal Reserve Wire Transfer Network)처럼 중앙은행이 소유·운영하는 형태와 LVTS(Large Value Transfer System)처럼 캐나다 지급협회(Canadian Payment Association: CPA)와 같은 민간이 운영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양 시스템의 지배구조 및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지역별 연방준비은행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Fedwire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접근하는 전국의 참가금융기관들에게 필요한 최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연방준비은행은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여기에는 패드라인 접근 통로⁶⁾(FedLine Access Solutions), 금융기관들이 연방준비계정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계정서비스⁷⁾(Account Services), 참가자들의 수표결제처리를 도와주는 수표서비스(Check Services), 자동정산소(ACH)를 통하여 추심거래 및 지급거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효율적이면서 저비용의 일괄지급서비스를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연방 자동정산소서비스(FedACH Services), 예탁금융기관에게 공공의 목적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통화를 공급하는 연방 현금서비스(FedCash Services), 1개월 비용으로 접근 통로를 가진 모든 전자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 일괄 팩키지서비스(FedComplete Packages), 금융기관이 제공한 지급거래의 사후분석을 도와주는 연방 거래분석서비스⁸⁾(FedTransaction Analyzer), 은행, 기업, 정부대리기관이 임무수행에 필수적인 동일한 날 지급, 증권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전자자금이체서비스(Fedwire Services) 등이 포함된다.⁹⁾

둘째, 연방준비은행은 국가의 효율적인 통화정책 수행, 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금융기관들을 감독하기 위하여 은행 및 비-금융기관 그리고 소비자로부터 데이터를 정기적 및 비정기적으로 수집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¹⁰⁾

6) 접근통로에는 FedMail, FedLine Web, FedLine Advantage, FedLine Command and FedLine Direct 등이 포함된다.

7) 여기에는 회계관리정보(Account Management Information), 프리미엄 회계정보서비스(Premium Accounting Information Services), 일간회계명세서(Daily Statement of Accounts), 월간회계비용명세서(Monthly Statement of Service Charges), 그리고 일중과다출금보고서(Daylight Overdraft Reports) 등이 있다.

8) <http://www.frbservices.org/serviceofferings/index.html>, 21 Dec., 2016.

9) 그 외 금융기관에게 참가자를 대신하여 결제파일을 제공하는 다자적 결제서비스(Multilateral Settlement Service)와 재무서비스(Treasury Services)도 제공한다.

10) <http://www.frbservices.org/centralbank/reportingcentral/index.html>, 2 Feb., 2017.

셋째, 연방준비은행은 금융기관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준비잔고(reserve balances, 과다 준비금 및 부족 준비금을 충족시키기 위한 잔고)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조치 및 정보를 제공한다. 참가금융기관들은 이 기능을 통하여 준비금계정 및 정기에탁계정을 관리하며 준비금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보를 포괄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방준비은행은 대부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연방준비은행 운영회람과 규정에 일치한 계절적인 대부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요한 대부프로그램 및 할인율에 관한 상세정보를 제공한다.¹¹⁾ 특히 연방준비은행은 금융기관들이 지불준비(reserve requirements), 정기에탁(term deposits) 및 대출창구 프로그램(discount window lending programs)을 수행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도 캐나다처럼 다양한 책임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방자문위원회(Federal Advisory Council)를 포함한 여러 자문 위원회¹²⁾을 두어 연방준비이사사회에게 직접적으로 조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중앙은행이 소유 및 운영하는 미국의 Fedwire와 다르게 캐나다 LVTS는 캐나다지급협회(CPA), 캐나다중앙은행(BOC) 및 재무부 등 다양한 기관이 관계하는 분산구조로 운영된다.¹³⁾ 우선 재무부 장관은 캐나다 지급협회의 이사회승인이 필요한 캐나다인 지급법(Canadian Payment Act: CP Act) by-laws 내용 중 캐나다 지급협회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캐나다인 지급법(CP Act) by laws내용을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¹⁴⁾ 또한 재무부장관은 현재의 규칙(rules) 및 새로운 규칙을 검토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표준(standard)과 by-laws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것을 지시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재무부장관은 지급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지시를 할 경우 해당지시를 발행하기 전에 캐나다중앙은행의 총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¹⁵⁾ 필요하다면 규칙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승인하지 않을 권한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중앙은행은 재무부와 함께 지급결제정산법 및 캐나다 지급결제법에 따라 LVTS를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캐나다중앙은행은 시스템적 리스크를 통제하여 안전하고 정상적인 결제가 이행되도록 하거나 외국은행지점이 캐나다중앙은행과 LVTS에 리스크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 LVTS참가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다.

11) <http://www.frb.services.org/centralbank/index.html>, 15 Dec., 2016.

12) 이외에 지역예탁기관 자문위원회(the Community Depository Institutions Advisory Council: CDIAC), 지역자문위원회(The Community Advisory Council: CAC)가 있다. 이병렬, “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캐나다의 ACSS와 미국의 Fedwire의 비교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6.3, p.62.

13) 1913년에 설립된 연방준비은행이 제공하는 지급서비스는 초기에는 무료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1980년에 제정된 통화감독법(MCA)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지급서비스로 발생된 모든 직·간접비용은 참가자 및 이용자들에게 수수료 형태로 전가시키고 있다.

14) 캐나다지급협회(CPA)는 LVTS뿐 아니라 소액결제시스템인 ACSS(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15) <http://www.payments.ca/governance-risk/enabling-legislation>, 23 dec., 2016.

마지막으로 캐나다 지급협회(CPA)는 LVTS의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면에서 스위스의 SIC(Swiss Interbank Clearing)처럼 민간운영기관이 단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유지 및 관리만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형태와 역할과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다. 캐나다 지급협회의 주 역할은 케네디언 지급법에 따라 설립된 이사회를 통하여 금융기관간 지급정산을 위해 시스템을 유지 및 관리하면서 새로운 지급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일이다. 또한 회원금융기관간의 지급정산결제를 규율하는 규칙과 표준을 제정 및 이행함으로써 국제결제 시스템과 캐나다 결제시스템간의 상호거래를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지급협회는 캐나다중앙은행 및 재무부를 포함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각자의 재정적인 책임을 충족시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LVTS의 유지 보수 및 일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캐나다 지급협회는 LVTS전산시스템 및 물리적 운영사이트를 포함한 특정 기능을 외부에 맡길 수 있다.¹⁶⁾그러나 이 경우에도 캐나다 지급협회는 by-laws가 LVTS에 요구하는 모든 기능과 활동들에 대한 보증 및 책임에서 면책되지 않는다.

2. 제도적 기반 구성

미국과 캐나다의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은 운영 근거를 법률에 두고 있으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규칙 및 절차를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시스템을 규율할 제도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모델법(Model Law)의 성격으로 총 5개장 4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4A: 이하 제4A편)이 있다. 이 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1978년 연방법(EFTA of 1978)과 달리 상업적 및 거액전자자금체계의 개시와 종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이다.

둘째, Fedwire를 통한 이체의 절차, 지급의 최종성 및 연방준비은행의 책임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규정 J」를 두어 참가자들을 규율하고 있다.¹⁷⁾

셋째, 연방준비은행은 운영회람(Operating Circular)을 이사회로부터 수권을 받아 발행하고 있다.¹⁸⁾ 총 12개의 장(OC)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회람 중 Fedwire와 관련된 부분은 제6장(OC)에서 규율하고 있다.

16) by-laws No.7, 3.

17) 미국은 2010년 7월 22일부터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시행하여 금융 감독체계를 대폭 개편하였다. 한정미, “주요국의 지급결제 관련 법제와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7호, 금융결제원, 2012.1, pp.104-105.

18) 62 Fed. Reg. 48, 166, 48, 169(1998) and 62 Fed. Reg. 27, 547, 27, 550 (1998).

마지막으로 회계가이드(Accounting Guide)¹⁹⁾는 금융기관들이 연방준비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계정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도 미국과 유사하게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의 법적 골격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먼저 캐나다는 미국의 제4A편에 해당되는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a Payment Act: CP Act)을 두고 있다. 이 법은 이사회의 역할, 재무부의 전반적인 책임, 조직의 형태, 회원의 자격 및 권한 등의 규정들을 포함하여 총 2편 49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⁰⁾

다음 하위규정으로서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이 캐나다 지급협회에 필요한 규칙과 표준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²¹⁾ Association by-laws(이하 by-laws)를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인 LVTS와 관련된 by-laws는 No.1부터 No.8까지 중 by-laws No.7이 적용된다. 여기에는 LVTS운영과 관리, LVTS의 접근, Tranch1의 순 채무캡의 설정, 양자적 신용제한의 설정, 추가적인 결제의무, 담보설정, 지급메세지의 교환, 지급메세지의 청산 및 지급의 최종성 등의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by-laws No.7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참가자와 캐나다 지급협회를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만약 LVTS의 운영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by-laws는 참가자간에 또는 참가자를 통해 이루어진 어떤 지급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²²⁾

다음으로 총 14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캐나다 지급법과 by-laws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LVTS 규칙이 있다. 여기에는 LVTS에 접근, 지급개시, 지급전송, 지급대기, 위험통제관리, 결제종료, 결제의 최종성과 반환, 위기관리, 지급증명, 채무불이행-비실행가능성, 청구 및 보상 등의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LVTS와 관련된 지급시스템절차(Payment System Procedures)가 있다. 지급시스템 절차에는 PRD-001 SET 절차를 비롯하여 PRD-010 유동성교환거래를 위한 절차까지 총 7개의 절차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다. 상기의 캐나다 지급법, by-laws, LVTS규칙 등이 LVTS 거래와 접근과 관련하여 참가자간의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면, 지급절차는 캐나다 내에서 달러 및 이종통화 간 교환과 관련된 절차 또는 청구 및 보상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19) 동 가이드는 첫째, 계정관리 가이드(Account Management Guide), 둘째, 주(state)간 인출계정구조에 관한 가이드(Guide to Interstate Branching Account Structure), 셋째, 주간 인출 큐 앤 에이(Interstate Branching Q & A)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유계정 관리매뉴얼(Reserve Manual)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http://www.frbservices.org/regulations/operating_circulars.html, 9 Feb., 2017.

20) 캐나다 지급법은 제1장 short title, 제2장 Interpretation, 제1편(제3장부터 제35장까지 캐네디언 지급협회와 관련된 규정)과 제2편(지정된 지급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제36장부터 제4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1) by-laws No.7, 2.

22) <http://www.payments.ca/about-us/governmence-risk/enabling-legislation>, dec., 23, 2016.

3. 선행연구분석 및 차별성

미국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었던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학술적 연구 환경도 꾸준히 조성되어왔음이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내 연구에서 정경영(1994, 2007)²³⁾은 전자자금이체를 지급이체와 추심이체로 구분하여 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주요쟁점에 관한 법적 문제점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병렬(2010.9)²⁴⁾은 미국의 제4A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지시의 최종성 판단기준 및 효력과 수신은행의 지급지시의 승낙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더 나아가 2016년에는 캐나다의 전자지급시스템인 ACSS와 미국의 소액전자지급시스템인 FedACH를 중앙은행의 역할과 지급구조, 운영 및 위험관리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한 바 있다. 진재석(2008, 2009)²⁵⁾은 미국과 캐나다의 지급제도를 제도적 측면, 지급결제수단 및 지급결제제도로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주요국 지급결제제도의 특징 및 전망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미국과 캐나다의 지급결제에 관하여 연구 활동을 비교적 활발하게 해 온 학자로 김서영(2011.7, 2012.10, 2013.7)²⁶⁾을 들 수 있다. 그는 ‘지급결제와 정보기술’지에 여러 편에 걸쳐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의 관련법제, 발전전략 및 운영구조와 주요특징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김규수·김용혁(2011)²⁷⁾도 영국·캐나다·호주의 거액결제시스템 운영현황, 개편동향, 추진개요 및 주요특징 등에 관한 분석을 한 바 있다. 그리고 한정미(2012)²⁸⁾는 미국과 캐나다의 지급결제 관련 법제를 비교하면서 특히, 최근 캐나다의 지급결제관련법제 규정(by-laws)의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윤성·김민정(2014)²⁹⁾은 주요 20개국 거액결제시스템의 현황을 설명하고 현재 주요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의 개편방향, 개편목적 및 개편성격 등에 대해서 소상히 분석한 바 있다.

한편, 해외에서 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보인 대표적인 학자로서 들

23) 정경영, “전자자금이체제도의 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07.

24) 이병렬, “국제전자자금이체시스템에서 지급의 최종성과 유용성에 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0.9: “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캐나다의 ACSS와 미국의 FedACH의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6.3.

25) 진재석, “주요국 지급결제제도의 특징 및 전망”,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5호, 금융결제원, 2009.1: “캐나다 지급결제제도”,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2호, 금융결제원, 2008.4: “주요국 지급결제제도의 특징 및 전망”,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5호, 금융결제원, 2009.1.

26) 김서영, “주요국 지급결제제도 발전전망과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0호, 금융결제원, 2012.10: “미국과 일본의 지급결제동향과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3호, 금융결제원, 2013.7.

27) 김규수·김용혁, “영국·캐나다·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전략 및 시사점”, 「지급결제 조사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11.1.

28) 한정미, “주요국의 지급결제 관련 법제와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7호, 금융결제원, 2012.1.

29) 이윤성·김민정, “주요국 거액결제시스템의 운영현황 및 개편동향”, 「지급결제 조사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14.3.

(Dole)³⁰⁾과 게바(Geva)³¹⁾을 들 수 있다. 돌(Dole)은 미국의 거액전자자금이체에서 수신은행의 책임을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 특히 그는 수신은행을 원지시인의 거래은행과 수익자의 거래은행으로 구분하여 착오와 사기에 대한 당사자간의 책임과 면책을 제4A편과 일부 판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게바(Geva)는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을 연구하면서 원지시인의 지급지시, 수신은행의 지급지시의 수신 및 승낙 및 수익자의 승낙에 따른 지급의 최종성을 규율하는 주요 규정과 지급메카니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그는 법원의 판례결과를 인용하여 당사자의 책임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캐나다인 지급협회(2014, 2015)³²⁾는 연례보고서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로써 전략 리스크, 운영 리스크, 금융 리스크, 결제리스크, 인적자원관리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 및 IT와 제도적 리스크로 상세히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참판과 추(Chapman & Chiu, 2015)³³⁾는 캐나다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인 LVTS의 운영을 담당하는 지급협회의 역할, 정책적 목표, 리스크 관리대책 및 지급결제시스템의 주요한 특징에 대해서 고찰한 바 있다.

그러나 동 연구는 미국 및 캐나다 양국의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을 대표하는 Fedwire와 LVTS 간의 지배구조, 시스템 참가방법, 지급지시의 착오, 위험관리정책 그리고 지급의 최종성 등 참가자간의 의무와 책임을 부담시키는 쟁점들을 관련 법규 및 규정에 근거하여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관련법을 단지 고찰하거나 소개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존의 선행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III.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방법 및 착오규정 비교

1. 참가방법

캐나다의 LVTS는 참가방법을 직접참가와 간접참가로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Fedwire는 온라인 방식(on-line)과 오프라인 방식(off-line)으로 참가방식으로 구별되어 있다. 즉

30) Richard F. Dole, "Receiving Bank Liability for Errors in Wholesale Wire Transfer," Tulane Law Review Vol. 69, 1995.

31) Benjamin Geva, The Law of Electronic Funds Transfer, New York: Matthew Bender, 2003.

32)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2014, 2015 Annual Report.

33) James Chapman & Jonathan Chiu,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the Next Generation of CPA Systems: An Analytical Framework", Canadian Payment Association Discussion Paper No. 2, September 2015.

양 방식을 통하여 외국은행 및 지점, 금융기관 및 대리인, 은행 및 자회사 등과 통신약정을 체결한 비 참가자들을 포함한 약 7,500여개의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들이 미국의 Fedwire에 자유로이 참가하고 있다. 주로 단말기(또는 인터넷기반 PC)접근방식 및 서버접속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방식은 연방준비은행의 패드라인(FedLine)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다. 이 방법도 패드라인 디렉트(FedLine Direct)와 패드라인 어디벤티지(FedLine Advantage)를 각각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는 밴드(Vendor)를 이용해야 하고, 후자는 패드라인 디렉트와 먼저 동의자 접근수준(Subscriber Access Level)을 결정한 이후 연방준비은행의 외부동의자 요청양식(External Subscriber Request Form)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참가할 수 있다.³⁴⁾

다음 대부분 전화를 통하여 지급지시를 발행하는 오프라인 서비스를 통해서도 패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다. 오프라인서비스는 온라인서비스에 운영적일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로 이용된다. 오프라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식수권 목록표(Official Authorization List)에 등록된 개인이 서명한 서면양식이 필요하다.³⁵⁾

한편, 캐나다 LVTS는 직접 참가방법과 직접 참가하지 못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간접으로도 참가를 허용하고 있다.³⁶⁾ 참가자의 접근은 LVTS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와 참가자의 지위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LVTS 규정에서 제시된 절차에 따라 통제될 것이다.³⁷⁾ 참가자가 LVTS 규정에서 제시한 참가절차를 완료하면, LVTS에 참가할 수 있다.³⁸⁾ 우선 직접참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참가기관은 캐나다중앙은행에 결제계정을 개설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다자간 순 포지션을 결제하기 위해 캐나다중앙은행에 전도금과 전도금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물을 약속하여야 하고, 캐나다중앙은행이 체결을 요구하는 약정을 언제라도 체결하여야 한다. 둘째, by-laws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및 다른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셋째, 입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³⁹⁾ 만약 캐나다중앙은행을 제외하고 참가자가 상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캐나다중앙은행이 캐나다 지급협회의 의

34) 약정(Fedwire Third-Party Service Arrangement)를 별도로 체결하여 제3자가 제공하는 지급이체서비스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방법도 있다.

35) Richard F Dole., "Receiving Bank Liability for Errors in Wholesale Wire Transfer," Tulane Law Review Vol. 69, 1995, pp.32-45.

36) 캐나다 외에 한국, 중국, 유럽연합, 남아공, 터키, 영국 등도 간접 참가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간접참가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중 영국은 17개 기관만 직접 참가하는 고도의 계층화된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 싱가포르, 스웨덴, 중국, 터키 등은 간접참가대행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37) by-laws No.7, 4.

38) 직접참가기관에는 2017년 1월 현재 캐나다중앙은행(Bank of Canada)을 비롯하여 총 16개 기관이, 간접 참가기관에는 Airline Financial Credit Union Limited(대행기관 Bank of Montreal)을 포함하여 65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39) by-laws No.7, 13(3)(c). 입회비는 새로운 참가자가 지불하는 입회비와 관련된 행정비용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새로운 참가자는 캐네디언 지급협회 by-laws NO.2-Finance 조항에서 요구하는 개발비용(업그레йд 비용을 포함하여)중 미상 각부분에다 이자를 합한 비용을 입회비로 지급해야 한다.

장에게 관련사실을 통지하는 즉시 자동적으로 참가자의 지위가 중지된다. 의장은 지위가 중지된 참가자의 명단을 모든 참가자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⁴⁰⁾ 참가자의 지위가 중지되었거나 철회된 참가자는 캐나다 지급협회에 LVTS by-laws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복권을 신청할 수 있다, 복권할 경우에도 13조(c)항에서 규정한 입회비를 지급해야 한다.⁴¹⁾ 또한 참가자가 by-laws에서 명시한 LVTS참가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급한 후에도 참가철회의 의사를 캐나다 지급협회의 의장에게 통지한다면 LVTS참가를 철회할 수 있다.⁴²⁾ 참가자가 철회의사를 LVTS결제가 발생하는 주기 동안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참가철회의 효력은 LVTS결제주기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다.⁴³⁾ 또한 캐나다 지급협회는 직접참가기관을 이용하여 간접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직접참가기관 중 간접참가기관의 LVTS를 대행하는 기관은 캐나다지급협회(CPA)와 관련된 정보를 간접참가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운영정책 및 절차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Fedwire는 지급지시가 건별로 즉시 결제가 종료된다.⁴⁴⁾ 반면 혼합형 결제방식을 택하고 있는 캐나다의 LVTS는 마감시점에 다자간 차액결제방식으로 최종결제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결제종료방식과 다르다.⁴⁵⁾ 그러나 LVTS는 리스크 통제장치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급지시는 무조건 또는 취소불가능한 자금이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지급지시 승낙 후 취소불가능성을 인정하는 Fedwire와 함께 지급지시의 취소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운영시간 면에서는 양국은 동일한 시차 대를 가지고 있어 주간시간대 뿐 아니라 야간시간대 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LVTS는 야간시간까지 운영하지만 일반적인 자금이체는 주간시간의 업무 또는 기관에 한해 제한하고 있다.

거래유형면에서 미국의 Fedwire와 캐나다의 LVTS는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고객의 자금이체뿐 아니라 소액결제·증권결제 관련 대금도 결제하고 있는 점은 유사하다. 그러나 캐나다는 증권 및 외환 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해 증권대금동시 결제(DVP)방식과 CLS은행을 통한 외환 동시결제(PVP)방식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민간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

40) by-laws No.7, 14.

41) by-laws No.7, 16.

42) by-laws No.7, 17.

43) 이윤성 및 김민정, “주요국 거액시스템운영현황 및 개편동향”, 「지급결제 조사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14.3, pp.35-39.

44) 유럽(TARGET2, 2007), 일본(BOJ-NET, 2008), 한국(BOK-Wire+, 2009)은 실시간 총액결제방식과 양자간·다자간 차감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혼합하는 결제방식을 채택하여 운영 중에 있다.

45) 김규수·강정미, “주요국 차액결제리스크관리제도”, 「지급결제 조사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09.9 pp.1-7.

인 CHIPS를 별도로 두어 외환 및 증권거래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국의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은 자금이체 규모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용수수료를 책정하는 방식에서⁴⁶⁾ 캐나다는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지출되는 비용 전부를 회수하는 비용회수법(cost recovery method)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시스템 구축·운영비용을 회수하는 것 외에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시장가격책정법(market based pricing)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이용수수료는 미국은 건당수수료(건수 또는 금액) 또는 정액수수료(월 또는 연) 형태로 부과하는데 건당수수료는 시간대별, 거래건수, 자금이체유형 및 이체금액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 부과하는 이중 수수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자금이체유형의 경우, 인센티브할인율의 적용여부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하고 이체금액에 따라서는 3가지(Tier1, Tier2, Tier3)로 구별함으로써 상당히 구체적인 수수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⁴⁷⁾ 그러나 지급지시금액에서 수수료를 감한 금액만 수익자에게 지급이체시키는 캐나다는 신규참가기관을 포함하여 이체·수취기관에 이체관련비용 모두를 부과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⁴⁸⁾

〈표 3-1〉 운영정책에 관한 비교

구 분	미국 Fedwire	캐나다 LVTS
참가방법	On-Line/Off-Line	직접참가/간접참가
결제방식	총액결제방식	혼용결제방식(총액+차액)
수수료책정방식	시장가격 책정법	비용회수법
착오규정	착오주체에 비중	착오행위에 비중
운영시간대	주간 및 야간시간까지 운영 함	좌동(일반자금이체: 주간시간 운영)

한편, Fedwire의 운영시간은 매 영업일기준 동부시간대(E.T)로 9시(PM)부터 6시 30분(PM)까지 21시간 30분 동안이다. 그리고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와 같은 공식적인 공휴일 제도를 두고 있다.⁴⁹⁾ 그러나 만약 상기의 공식공휴일이 토요일과 중복된다면 연방준비은행과 지점들은 금요일에 영업을 개시하고 일요일과 중복된다면 모든 연방준비은행과 지점들은 익

46) BIS 핵심원칙에서 제시하는 이용수수료 책정 방식에는 중앙은행이나 시스템 운영자가 금융시장의 발전 또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지급결제경로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수수료를 책정하는 보조가격 책정법(subsidised pricing), 결제계좌의 개설 또는 유지 수수료 부가방식(유럽연합, 남아공, 영국의 영란은행), 신규 참가기관에 대한 수수료 부과방식(캐나다, 스웨덴), 부가서비스 제공, 별첨성 수수료방식(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등이 있다.

47) http://www.frbservices.org/servicefees/fedwire_funds_services_2014.html, 25 Jan., 2017.

48) http://www.cdnpay.ca/imisi15/pdf/pdf-publications/LVTS_Best_Practice_Statement.pdf, 17 dec., 2016.

49) <http://www.frbservices.org/holidayschedules/index.htm>, 22 Jan., 2017.

일 월요일을 임시휴업일로 지킨다. 캐나다의 LVTS 운영시간대는 오전 3시부터 18시까지지만 운영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지급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캐나다지급협회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및 모든 참가자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LVTS를 통해서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거나 캐나다중앙은행의 계정에 LVTS의 즉시 결제의 종료를 지시할 수 있다.

3. 착오

미국의 Fedwire를 규율하는 제4A편에서는 착오적인 지급지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착오의 주체 및 유형에 따른 책임 분담에 비중을 두고 있는 편이다.⁵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착오를 범할 주체로서 첫째, 원지시인(originator)을 들 수 있다.⁵¹⁾ 원지시인은 지급지시를 전송하면서 거래은행 또는 수익자를 지정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정번호 또는 명의를 착오하여 계정번호 및 알파벳을 부정확하게 지정하는 착오를 범할 수 있다. 둘째, 거래은행(receiving bank)도 지급지시를 이행하면서 원지시인이 지정한 금액 및 수익자를 달리하여 수익자의 거래은행에게 착오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그리고 거래은행 중에서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원지시인이 지정한 수익자의 계정을 착오하여 다른 수익자의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지급 하는 착오를 범할 수 있다.

한편, 캐나다의 제도에서 착오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by-laws No.7에서 두고 있다. by-laws No.7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의 유형은 미국의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보다 더 구체적이며 착오주체보다는 착오의 행위에 기준을 두고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제도와 다르다. 즉, 착오의 유형을 첫째 수취인의 명의로 계정번호가 다른 사람의 것임을 발견한 경우, 둘째, 지정된 수취인 외에 착오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정한 경우, 셋째, 지정된 지급금액 외에 착오적으로 지급지시의 금액을 지시한 경우, 넷째, 이전의 지급지시 전송자가 전송한 지급지시를 착오적으로 중복 전송한 경우, 다섯째 착오가 발생한 상태에서 수신참가자가 착오 및 누락을 정정하지 않아 수취인에게 지급지시의 금액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지시의 누락 및 착오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신참가자를 대신한 개인이 수취인에게 지급지시의 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지시에 수취인의 명의로 계정번호가 다른 사람의 것임을 발견한 경우 또는 수신참가자가 착오 및 누락을 교정하지 않고 수취

50) 제4A-303.

51) Thomas C. Baxter Jr., Stephanie A. Heller and Paul S. Turner, The ABCs of The UCC, American Bar Association, 2006, pp.65-70.

인에게 지급지시의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 즉, 누락 및 착오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⁵²⁾ 따라서 수신참가자가 지급지시의 금액을 이체한 이후에 착오를 발견하였다면 착오정정절차에 따라 전송참가자에게 지급지시의 금액을 반환하던지 또는 만약 수신참가자가 수취인에게 지급지시의 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수신참가자의 착오탐지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착오가 발견하였을 경우 지급지시를 교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그의 지급이행의무는 면제될 것이다.⁵³⁾

그러나 수신참가자가 본인이 전송한 지급지시가 착오임을 인지하고 제43조 및 제44조에서 명시된 기간 이내에 지급지시를 정정한다면 지급지시의 수신시점은 수신참가자가 지급지시를 수정하는 시간으로 간주되어 수취인에게 최종적이며 취소불가능 한 지급지시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IV. 거래지급결제시스템의 위험관리 및 지급의 최종성규정 비교

1. 위험관리제도

지급지시의 결제가 건별로 즉시 발생하는 미국의 Fedwire에서는 신용위험보다는 유동성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국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중(daylight)담보대출제도를 설립하여 참가기관에게 일중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⁵⁴⁾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연방준비은행은 준비은행에 계정을 보유한 금융기관과 일반고객들을 분리한 이중 위험관리 대책을 적용시키고 있다. 먼저 금융기관에 대한 위험관리대책에서는 연방준비은행이 규정한 일중당좌대출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인출금액의 일평균을 산출한 수수료를 부과시킴으로써 과도한 일중초과인출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⁵⁵⁾ 금융기관들이 부담하는 일중초과인출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순 채무갯으로 이용한 금액에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다음 일반 고객들은 일상적인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결제실패에 대해서는 지급을

52) by-laws No.7, 46(1)(a).

53) by-laws No.7, 46(1)(3).

54) 일중유동성을 무이자부 RP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 호주, 브라질, 러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 등이 해당된다.

55) 비용을 효율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수수료계산시점은 2주간을 기준으로 미화 25달러 또는 그 이하의 금액을 공제하고 Fedwire이체 및 순 결제이체지시가 당일엔 준비은행의 계정이나 정산소의 계정으로 이체되는 초과인출금액만 계산하고 있다.

보장해줌으로써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다.⁵⁶⁾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미국은 연방준비은행과 금융기관간에 양자적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먼저 연방준비은행은 제공한 결제관련시설과 소프트웨어(운영체계)에 바이러스 및 일부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보수 및 대체할 일부 책임이 있다. 또한 연방준비은행은 간접손실(consequence damages)을 제외하고 나머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반면, 금융기관은 자금이체과정에서 기밀유지를 위하여 합의한 보안 절차를 상업적으로 상당한 주의 의무를 가지고 지급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방준비은행이 제공한 시설과 시스템을 연방준비은행의 승인 없이 새롭게 배치 및 제거해서는 안된다. 또한 금융기관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과 관계없이, 자금이체영업일 동안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의 이행을 지연시켰다면 연방준비은행에게 이행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표 4-1〉 지급구조에 관한 비교

구 분	미국 Fedwire	캐나다 LVTS
지배구조	연방준비은행 소유 및 운영	캐나다 지급협회운영/ 캐나다중앙은행 소유 및 감독기능
위험관리	유동성 위험관리에 비중	신용 위험관리에 비중
지급의 최종성	수익자거래은행의 승낙	캐나다 중앙은행의 결제

한편, 총액결제시스템을 운용중인 미국이 신용위험보다는 유동성위험관리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총액과 이연차액을 혼용한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캐나다는 신용위험관리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다자적 결제방식에서는 지급의 확실성 및 최종성을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시스템의 안정성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기 때문이다.⁵⁷⁾

지급지시의 전송방법이 Tranch1과 Tranch2로 구별되어 있는 캐나다의 LVTS는 신용위험 관리방법도 구별하여 각각 시행하고 있다. Tranch1은 결제불이행부담방식(defaulter-pay)을 적용한다. 즉, 참가기관은 결제불이행을 유발한 기관(defaulter)이 100% 납입한 담보를 사용해 손실을 부담하는 Tranch1계정의 다자간 순 채무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반면 Tranch2 계정을 이용할 경우 양자 간 순 수취한도를 설정하고 타 참가기관에게 허용한 최대 순 수취한도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납입해야 한다. 즉, 특정 참가자가 결제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결

56) 이병렬 “국제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ACH와 Fedwire의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3, pp.150-151.

57) 캐나다는 양자 간 및 다자간 한도설정, 순수취한도 및 담보제도 등을 통하여 신용위험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제를 이행한 나머지 참가기관(survivors)이 사전에 합의한 계산방식에 따라 결제불이행참가자가 불이행한 손실금액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손실분담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⁵⁸⁾ 따라서 참가기관은 매일 Tranch1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순 채무한도를 설정하고 Tranch2를 통해 지급지시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최고 추가채무한도를 계산할 수 있는 기관별 양자 간 수취한도를 설정하여 한도초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참가기관이 결제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참가기관이 Tranch1과 Tranch2에 납입한 모든 담보를 우선 사용하여 결제불이행금액을 결제하고 잔여 미결제금액이 있을 경우 각 참가기관이 Tranch2의 결제불이행 기관에게 설정한 양자 간 순수취한도 금액을 비례하여 결제한다. 캐나다중앙은행은 결제불이행참가기관 및 결제이행참가기관의 담보가 모두 사용된 경우 잔여금액에 대해 결제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2. 지급의 최종성과 효과

미국의 Fedwire와 캐나다의 LVTS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의 최종성의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이 운영기관이자 결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미국의 Fedwire에서 지급의 최종성⁵⁹⁾을 판단하는 기준은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지급지시의 승낙이다. 이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전송은행이 수익자의 거래은행에게 지급을 이행할 것, 둘째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전송은행의 지급지시를 수신할 것, 셋째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수익자의 계정으로 지급지시의 금액을 지급이체하고 그 사실을 통지할 것, 마지막으로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수익자의 계정으로 이체된 자금을 수익자가 즉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권한을 양도하면 지급은 종료된다. 이처럼 미국에서의 지급지시의 최종성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승낙이다.⁶⁰⁾ 이는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승낙이 수익자에 대한 이체지급으로 연결되어 결국 수익자에 대한 원지시인의 의무를 면책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반면, 캐나다 LVTS에서 지급의 최종성의 개념은 미국에서 지급의 최종성의 개념보다 엄격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수신참가자가 지급지시를 실제 수신하였음을 전제로 다음 사항 중 가장 빠른 시점에 수취인에게 최종적이며 취소불가능 한 지급으로 간주한다.⁶¹⁾ 첫째, 자금이체 서비스요금을 감한 지급지시의 금액을 수취인의 계정에 이체지급 한 경우 둘째, 수

58) 2016년 12월 현재 일평균 거래건수의 99%와 일평균 거래금액의 80%가 Tranch2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59) Benjamin Geva, "Payment Finality and Discharge in Funds Transfers", Chicago-Kent Law Review Vol. 633, 2008, pp.8-9.

60) 제4A편-209(b)(1).

61) by-laws No.7, 45.

신참가자가 적법하게 수취인에게 지급한 지급지시의 금액에서 서비스비용을 감한 금액을 수취인이 인출한 경우 셋째, 자금이체 서비스처리방법 및 공시와 관련된 규정에서 명시한 조항에 따라 서비스비용을 공제한 지급지시의 금액을 수취인이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수신참가자의 다른 행위가 있었을 경우 등이다.⁶²⁾

따라서 지급의 최종성은 수취인의 지급지시의 승낙을 포함하여 중앙은행에서의 최종 결제 여부를 통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는 운영기관과 결제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캐나다의 LVTS가 이연차액결제시스템을 가미한 혼용시스템인 관계로 캐나다 중앙은행의 계정에서의 결제가 발생하여야 최종적이며 취소불가능 한 지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⁶³⁾ 즉, 지급지시의 승낙이 발생하더라도 캐나다중앙은행의 계정에 지급지시의 금액이 부족하여 다자적 순 포지션을 결제하는데 실패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캐나다중앙은행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참가자에게만 결제를 허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전도자금을 금융기관이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의 최종성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지배구조와 결제방식면에서 미국의 Fedwire는 연방준비은행이 소유 및 운영할 뿐 아니라 결제기능까지도 수행하는 단일구조의 총액결제시스템이다. 반면 캐나다 LVTS는 국경을 초월한 캐네디언 달러거래를 취소불가능지급을 처리하는 총액과 이연차액을 결합한 결제시스템으로서 캐나다지급협회가 운영하지만 최종결제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분리형 지급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상이한 구조를 가진 양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최근 결제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캐나다의 LVTS의 경우는 2015년 말 기준 5백만 달러이상의 거액지급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여 전체 증가율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⁶⁴⁾ 이처럼 미국의 Fedwire와 캐나다의 LVTS는 향후에도 양국을 뛰어넘어 국제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이라는

62) by-laws No.7, 52.

63) by-laws No.7, 57.

64) 2015년 기준 미국의 Fedwire의 거래건수는 약 1억 4천 2백 7십 5만 7천 1백 건을 처리하여 2014년에 비하여 5.7% 성장하였다. 또한 거래금액은 834조 6천 3백억 달러에 달해 2014년 기준 5.6% 성장하였다. 이체건당 평균금액은 거액지급시스템에 걸맞게 5백 85만 달러이며 일평균 이체금액은 3조 3천 120억 달러이며 일평균 이체건수는 566, 496건이다. 그리고 캐나다의 LVTS는 2015년 기준 총 거래건수는 약 8백 1십만 건을 처리하여 2014년에 비하여 2.5% 성장하였다. 총 결제금액도 미국의 페드시스템과 비교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지만 43조 달러에 달해 2014년 기준 11.1% 상승하였다. 이체건당 일평균 1천 7백 1십억 달러를 처리함으로써 일평균 32,113건을 처리하였다.

명성에 걸맞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거액전자지급결제시스템을 비교 연구한 결과 한국에서의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은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직접 연계하여 기업 등이 거액자금을 실시간으로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17년 3.3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소액과 거액이체시스템을 분리운영하고 있는 미국 및 캐나다와 다르게 한국은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 관계로 신용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액결제망을 통하여 거액자금을 이체해왔다. 그러나 연계결제망의 구축으로 신용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감소하였으나 기타 리스크의 발생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금이체 주체별 및 금액별로 분리하여 참가자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착오의 유형에 대해서 미국과 캐나다제도에서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제도에서는 착오의 발견 및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고 다만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거액이체시스템에서 지급지시의 착오는 참가자간의 의무와 책임의 분기점으로써 가장 큰 이해관계를 야기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착오에 관한 명확한 정의와 유형에 따른 책임의 분기점을 명시하여 참가자를 안정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BOK-Wire+는 재무건전성, 예상 이용건수(1년간 월평균 50건 이상) 및 전담인력(4명 이상)요건만 구비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BOK-Wire+에는 은행 이외에 비은행금융기관인 청산결제기관 등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간접참가방식으로도 참가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참가요건에 지급시스템 운영 기술력 확보, 비상시에 대비한 적절한 백업자원 및 엄격한 보안 및 기술 요구조건 충족 등 상기 금융선진국들이 제시하는 자격을 추가로 요구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규수·강정미, “주요국 차액결제리스크관리제도”, 「지급결제 조사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09.9.
- 김규수·김용혁, “영국·캐나다·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전략 및 시사점”, 「지급결제 조사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11.1.
- 김서영, “주요국 지급결제제도 발전전망과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0호, 금융결제원, 2012.10.
- , “미국과 일본의 지급결제동향과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3호, 금융결제원, 2013.7.
-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07.
- , “전자자금이체제도의 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진재석, “미국의 지급결제제도”,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2호, 금융결제원, 2008.4.
- , “캐나다의 지급결제제도”,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2호, 금융결제원, 2008.4.
- , “주요국 지급결제제도의 특징 및 전망”,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5호, 금융결제원, 2009.1.
- 이명성, “미국의 지급결제제도 현황”, 「해외광고시장브리프」, 통권 제2015-2호, 한국광고진흥공사, 2015 spring.
- 이병렬, “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캐나다의 ACSS와 미국의 Fedwire의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6.3.
- , “국제전자자금이체시스템에서 지급의 최종성과 유용성에 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 통상정보학회, 2010.9.
- , “국제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ACH와 Fedwire의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3.
- 이운성·김민정, “주요국 거액결제시스템의 운영현황 및 개편동향”, 「지급결제 조사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14.3.
- 한정미, “주요국의 지급결제 관련 법제와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7호, 금융결제원, 2012.1.
- Baxter, Thomas C., Stephanie A. Heller and Paul S. Turner, ABCs of UCC, America Bar Association, 2006.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Annual Report, 2014, 2015.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A Guide to Risk in Payment Systems Owned and Operated By the CPA", July 2005.

Canada Payment Act, RSC 1985, CC-21

Canada Payment Association By-laws No.7.

Chapman James and Chiu Jonathan.,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the Next Generation of CPA Systems: An Analytical Framework", Canadian Payment Association Discussion Paper No. 2, September 2015.

CPA Rules.

Dole Richard F., "Receiving Bank Liability for Errors in Wholesale Wire Transfer," Tulane Law Review Vol. 69, 1995.

Geva, Benjamin, The Law of Electronic Funds Transfer, New York, Matthew Bender, 2003.

-----, "Payment Finality and Discharge in Funds Transfers", Chicago-Kent Law Review Vol. 633, 2008.

Tompkins Michael, "Canadian Payment Methods and Trends : 2015", Canadian Payment Association Discussion Paper No. 4, Dec., 2015.

Tompkins Michael, Jafri Sajjad and Arjani Neville, "The Role of Automated Funds Transfer Payments in Canada's Declining Use of Cheques", Canadian Payment Association Discussion Paper No. 1, July 2015.

<http://www.cdnpay.ca>, 21 Jan., 2016.

http://www.cdnpay.ca/imisi15/pdf/pdf-publications/LVTS_Best_dec, 17, 2016.

http://www.frbservices.org/servicefees/fedwire_funds_2014.html, 25 Jan., 2017.

http://www.frbservices.org/servicesetup/fedwire_fund-service.htm, 23 Jan., 2016.

<http://www.payments.ca/about-us/governmence-risk/enabling>, dec., 23, 2016.

<http://www.frbservices.org/holidayschedules/index.htm>, 22 Jan., 2017.

http://www.frbservices.org/regulations/operating_circulars.html, 9 Feb., 2017.

<http://www.frbservices.org/serviceofferings/index.html>, 21 Dec., 2016.

<http://www.frbservices.org/centralbank/reportingcentral/index.html>, 2 Feb., 2017.

http://www.federalreserve.gov/paymentsystems/pfs_about.htm, 17 Jan., 2017.

<http://www.frbservices.org/centralbank/index.html>, 15 Dec., 2016.

ABSTRACT

A Comparative Assessment Between LVTS of Canada and Fedwire of America as a Wholesale Electronic Payment System

Byeong-Ryul Lee*

I focused on LVTS compare with Fedwire to advance a research effects in this paper. The Fedwire Funds Service is generally used to make large-value, time-critical payments. The Federal Reserve Banks provide the Fedwire Funds Service, a real-time gross settlement system that enables participants to initiate funds transfer that are immediate, final, and irrevocable once processed. The Fedwire Funds Service is a credit transfer service.

While, The LVTS(Large Value Transfer System) is the high value electronic wire system that facilitates the transfer of irrevocable payments in canadian dollars across the country. Through LVTS, funds can be transferred between participating financial institutions virtually instantaneously in a fully collateralized environment.

Thus in this article, first of all, I considered features of payment system between LVTS and Fedwire. Second, I analyzed the governing structure and legal background. Third, I focused on the operational policy and risk aversion policy. Lastly, I suggested that the payment and banking system have to assume, with good reason, more efficiently accurately and securely operation together with conclusion.

Key Words : LVTS, Fedwire, U.C.C. Article 4A, Canadian Payment Act

*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structor.